2021학년도 1학기
「마약 · 대마 ·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」시행 계획

I 배경 및 필요성

□ 「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」는 ‘유아교육법 제22조의2’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교원들의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,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

II 시행방법 및 유의사항

1 시행방법

1. 시행명: 「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」

2. 시행일
   - 2021년 7월 ~ 2021년 8월

3. 시행 대상자
   - 2021년 8월 졸업 예정인 유아교육과 학생

4. **조회방식:** 학생 개인이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에 대한 의사 진단서를 지역대학으로 제출

1)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

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(개인별 제출)

▪ **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,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**

신청인(개인)		의료기관		신청인(개인)		교원양성기관
병원 검진	▶	검사 후, **검사결과통보서** 또는 **진단서 발급**	▶	교원양성기관에 **검사결과통보서** 또는 **진단서 제출**	▶	**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**

▪ **중독 여부 진단 방법 : TBPE 검사(소변검사)를 바탕으로 진단**

1차검사 (TBPE)*	▶	**음성 반응**	▶	**검사결과통보서 발급·제출**	- 병원 방문 수령, "양성/음성" 결과 기재
		양성 반응	▶	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, **진단서 발급·제출**	- **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**의 경우, TBPE검사 '양성' 반응 우려가 있어, **진단서 제출** 필요 - 병원 재방문 2차 검사(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)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- 병원 방문 접수, 의사 상담 후 수령 ("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" 기재)

* (결과확인) TBPE 검진 결과지를 바탕으로 확인, 병원에 따라 결과 확인에 소요기간 상이

※ 중독 여부 진단의 원활화를 위해 '교육부-한국건강관리협회(메디체크 전국 16개 시도지부)' 협약 체결 예정('21.6.22.)

*출처: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-3322(2021.06.21.)「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」

2) 제출 서류: 서류 유효기간 안에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

☞ [붙임 1, 2]

※ 서류 유효기간: 2020년 1월~2021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(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 이전까지)

※ 일부 **치료목적 약물 복용자**는 TBPE **'양성'반응**이 나올 수 있으므로, 이 경우 병원에 재방문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하고 **중독자가 아님**을 **증명**하는 **'의사의 진단서'**를 **제출**

※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마약류 중독 등에 대한 검진이 이루어졌다면, 해당 유효기간 내의 결과일 경우, 인정 가능

※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(면허 취득, 채용 신청용 등)의 경우, '마약류 중독자가 아님'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, 준용 가능

3) 학생은 병원에 총 2회 방문 필수

- 1회: 검사를 위한 방문
- 1회: 검사결과통보서 수령을 위한 방문(개인정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개인에게 우편으로 발송 X)

4) **검진방법: 소변검사로 실시**(혈액, X-ray 검사 방식도 가능)

TBPE검사 추천

※ (TBPE검사)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전반적 검사(일부 마약류 외 약물도 양성반응 가능)
(4대 마약 시약검사) 각 마약류 사용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(검사 신뢰도 상승)

5) **검진비용: 의료기관별 상이하나, TBPE검사의** 경우 **'검사결과통보서'만 받을** 시 약 5,000원~25,000원, **'진단서'** 포함 시 약 15,000~35,000원 예상

※ 2차 검사로 실시 가능한 '4대 마약 시약검사'는 TBPE 검사 비용보다 많은 비용 소요

6) **검진기관: 건강검진센터, 정신건강의학과, 가정의학과, 내과** 등에서 **검사** 후, **검사결과통보서 및 진단서 등 발급 가능**(사전예약 및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)

①**법무부 지정기관:**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*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, 검사 가능 ☞ [붙임 5]

* www.hikorea.go.kr 탑재된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마약류 검진기관 참조

※ 검사결과통보서(=마약검사결과지 등)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, 반드시 사전 문의 필요

②**한국건강관리협회: '21.6.23. 이후** 전국 16개 지부에서 **검사 가능**('21.6.22. 교육부와 협약 체결) ☞ [붙임 3, 4]

※ 검사결과통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지부에서 발급 가능

※ 한국건강관리협회를 통해 예약할 경우 '교사자격취득용 검사-대학'으로 예약해야 함('교사자격취득용 검사-(지역명)'으로 예약하면 안됨)

③2년마다 1회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중독 등에 대한 검진이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, 인정 가능

④**보건소는** 판별검사 **불가**

5. 제출 기간 및 제출처

- 2021년 7월 5일 ~ 2021년 7월 16일 지역대학으로 제출
- 지역대학 제출일이 지난 후 제출해야 하는 학생은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학과로 제출

② 유의사항

1. 본 교육은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며, '유아교육법'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 6월 23일부터 의무화됨
2.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대상자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
3. **2021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**의 경우,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짜는 **2020년 1월 이후**여야 함
4. 제출기한(2021년 7월 5일 ~ 2021년 7월 16일) 준수
5. 교원자격증 발급심사서류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」에 의해 준영구 보관됨